

解放以前の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金 敬 浩

A Study on the Fisheries Financing before the Liberation of Korea

Kyoung-Ho Kim

目 次

I. 序 言	1. 近代的 漁業制度의 確立
II. 合邦前後의 漁業實態	2. 組合金融制度의 成立
III. 合邦以前の 水産金融	3. 水産資金의 融通과 그 惠擇
1. 在來金融機關의 實態	V. 水産金融梗塞과 高利貸資本
2. 近代的 金融機關의 誕生	VI. 結 言
3. 水産金融과 客主制度	Summary
IV. 合邦以後의 水産金融	

I. 序 言

水産業이 原始的 採取經濟段階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모든 生産手段을 自家製에 依存하고 있었고, 漁業勞動의 形態 또한 家族勞動, 漁獲物自體도 主로 自給自足を 위한 食糧口實 밖에 別다른 意義가 없었던 것이므로 水産資金의 必要性도 없었다. 따라서 水産金融問題가 擡頭될 리 萬無한 것이다. 그러나 商品·貨幣經濟가 發達함에 따라 水産資材의 商品化의 比重이 높아지고 漁獲物의 商品의 交換이 이루어지기 始作함으로써 水産業도 貨幣需要가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一般的으로 水産金融問題를 論議할 때에 그 理論展開의 起點을 李朝末에 두고 있는 것은 現代漁業問題의 始點이 原始的 採取經濟의 漁業에서 求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農民層의 分解에서 그 端緒를 發見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¹⁾ 즉 漁家·漁民層 形成의 端緒는 農民層의 分解에서 發見되는 것이며 여기서 形成析出된 漁民層은 그 自體로서도 商品生産의 發展途上에서 分解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二重의 過程이 李朝末 特히 開港以後의 自然經濟의 解體過程에서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開港과 더불어 밀려들어온 西歐資本主義는 傳統的 封建社會인 李朝社會에 他律的 近代化를 強要하였고 特히 日本資本主義의 侵入은 市場擴大를 위한 商品經濟의 發達을 보게 되었다. 韓日合邦以後 日本은 植民地朝鮮을 食糧과 工業原料의 供給地로 삼는데 主力했기 때문에 韓國의 産業發展은 日本의 産業發展을 위한 「서브-시스템」의 機能을 強要當했다. 따라서 水産業도 日帝의 大陸侵略을 위한 食糧調達이란 觀點에서 振興되었고, 水産金融의 幅도 相當히 擴大되었으나 이는 主로 日本人 大規模資本制의 漁業者를 위한 것이었을 뿐 그 大部分의 朝鮮人 小規模零細漁業者에게는 資金 惠擇이 全無할 程度였다. 資本能力이 不足한 大多數의 韓國漁業者는 漁業生産에 必要한 資金의 不足分을 外部借入에서 補充할 수 밖에 없는 當時의 金融事情이고 보면 水産金融의 圓滑化如否가 水産

* 釜山女子大學 經營學科 助教授

1) 清水弘·小沼勇, 日本經濟發達史序說, p. 4.

經營의 成敗를 左右하는 가장 큰 要因이 된 것이다. 이러한 時點에 있어서 水産金融은 如何한 樣相을 띠고 展開되었으며, 또한 如何한 問題를 안고 있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II. 合邦前後의 漁業實態

李朝末期의 漁業은 漁具·漁法·漁船 등에 있어 極히 보잘것 없는 幼稚한 形態에 不過하였다. 즉 「從來로 本邦人이 使用하는 漁具는 그 種類가 不少하나 그 가운데서 重要的 點은 魚帳 魚箭에 屬하는 各種 漁具와 駐木, 設網, 中般, 弓般, 地曳網, 刺網 등이다. 그리고 이들 漁具의 構造는 大體로 粗笨하고 또한 그 大部分은 消極的 漁具에 屬하는 것이다. 그러나 地勢 및 潮流를 잘 利用하는 點에 있어서는 잘 發達되어 있다」²⁾고 한 것이나 「舊來의 漁業은 주로 港灣, 河口 등에서 行해진 結果 그 漁具는 防簾, 魚帳, 學網, 駐木 등의 定置漁具 및 地曳網, 中船, 引船, 刺網 등의 運用漁具에 不過하고 그 構造 亦是 大體로 粗笨하다」³⁾고 한 것 등에서 볼때 充分히 짐작이 된다. 한편 漁船의 境遇 「本邦沿岸에 있어서의 普通漁船은 漁業의 種類에 따라 그 構造가 特殊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形狀은 若干 橢圓形이며, 肩幅一丈 長三丈三尺 깊이 四尺型의 것이 가장 많고 큰 것이라야 肩幅一丈三, 四尺을 超過하지 않는다. 大概 船內는 五區로 나누나 그 區劃에 칸막이판자를 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一旦 海水가 侵入하게 되면 이를 막을 道理가 없으며 또 肋材가 없고 木釘으로 建造하기 때문에 自然히 脆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船底가 넓기 때문에 船體의 動搖가 적고 매우 浮力이 크다. 特히 附屬具인 키의 構造에 의하여 淺所의 通航에 適合하고 돛의 構造에 의하여 駛走에 便利한 것과 같은 點은 本漁船의 特徵이다」⁴⁾고 하고 있으니 이 또한 脆弱하기 짝이 없었다.

當時의 漁業은 大部分 沿岸 또는 內灣에서 地勢나 潮流 혹은 朝夕干滿의 差를 利用하여 魚族이 自然히 捕獲되도록 하는 原始的 受動的 漁具를 使用하였고, 漁船도 凌波性이 缺如된 脆弱한 것이므로 自然히 沿岸에 局限된 受動的 靜態的 漁業形態를 벗어날 수가 없었음은 當然한 일이다. 漁業의 種類 또한 數的으로는 30餘種이 되고 있었으나 그 大部分은 淺海定着性의 貝藻類採捕와 같은 原始的인 零細漁業이었고, 比較的 發達된 資本制的 漁業은 數種目에 不過했다.⁵⁾

開港以後에는 韓海漁業에 많은 變化가 일어났다. 事實 開港直後에는 韓日間에 何等의 漁業協定도 締結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日本人의 韓海通漁는 比較的 密漁形態에 不過하였으나 1883年 韓日間에 「通商章程」이 締結됨에 따라 同第41款 規定에 의해 日本漁民의 韓海通漁가 合法化됨으로 서 對韓日本人의 出漁는 急速度로 增加하기 始作하였다. 日本資本主義發展에 起因한 都市人口의 集中과 交通의 發達로 水産物市場이 擴大되고 淸日, 露日戰爭의 遂行을 위한 軍糧調達上 水産物의 需要가 不可避하게 되자 이들의 韓海進出은 더욱 促進되었다. 말하자면 日本은 明治中期以後 資本主義의 商品生産의 發展에 따른 食糧需要와 淸日, 露日戰爭遂行上의 軍糧調達 등은 水産物의 需要를 增大케 하였으나 反對로 漁業生産은 이를 充足치 못하였으므로 開港以後 日本의 韓國에 대한 漁業侵略이 本格的으로 展開된 것은 變換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日本人의 來漁가 合法化된 以後부터 韓

2) 水協中央會, 韓國水産發達史, 1966, p. 136.

3) 朝鮮總督府, 朝鮮の水産業, 1919, p. 10.

4) 林仁榮, 李朝魚物圖研究, 1977, pp. 18-19.

5) 朝鮮總督府, 前掲書, p. 10.

日合邦에 이르기 까지 約 31餘年間은 事實上的 韓海漁業은 日本人이 主導權을 掌握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韓海通漁가 合法化됨에 따라 各種의 日本式 漁具·漁法이 韓國에 導入되고 韓國人 漁業者들은 이를 模倣, 習得하기 始作하였다. 日本式 漁具는 韓國舊來의 漁具와 規模面에서는 비슷하였으나 다만 能率面에 있어서는 오히려 日本이 越等하였고 網地 또한 優秀하였다. 따라서 韓國漁業은 漁船勢力이나 從業員의 數的面에서 日本보다 3倍以上 많았음에도 不拘하고 漁獲高는 오히려 그들보다 적었다.⁶⁾ 結局 韓日合邦以前の 韓國漁業은 合邦때 까지를 미루어 볼때 全般的으로 刮目할만한 技術的 發展없이 非能率的인 在來式 漁具·漁法이 그의 原型 그대로 繼承된 幼稚한 段階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韓日合邦以前에는 이미 韓海通漁의 霸權은 日人에게 있었고, 合邦이란 政治的 大變革以後에는 從來 韓國이 日本漁業에 대하여 加해졌던 여러가지 制限 및 各種 複雜한 手續 등이 解消됨으로써 日本漁民의 通漁 및 移住는 더욱 急激한 增加를 가져왔다. 그 例의 하나는 1900年의 通漁船數가 1,854隻이었던 것이 1910년에는 無慮 3,960隻, 1911년에는 5,000隻으로 增加한 事實이다.⁷⁾ 事實 韓日兩國間의 漁業은 通漁初에는 二元的 性格을 띠고 있었으나 時間的 經過와 더불어 日本 漁業者도 韓國人의 漁業種目에 積極 參與하여 兩國民에 의한 韓海漁業은 對象魚種에 있어서 完全히 一元化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合邦前부터 始作된 韓國舊來漁業의 日本式 漁業으로의 轉化는 合邦以後 大幅的으로 普及되기 始作하여 많은 韓國人 漁業者들이 各 分野에서 日本式 漁具·漁法을 模倣習得하여 이를 採用한 것이다.

日帝時代의 韓海漁業은 日本資本主義의 發達과 併行하여 發展되었다. 明治中期以後 日本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商品生産의 發展에 따른 都市人口의 集中과 交通의 發達は 水産物市場을 顯著히 擴大시켰고 이와 같은 水産物의 消費力의 增大는 漁撈技術의 近代化와 海洋進出을 刺戟하는 要因이 되어 明治 30年代에는 産業資本의 確立과 더불어 遠洋漁業獎勵法의 公布로 漁業의 海外進出은 더욱 活氣를 띠게 되었다. 日本資本主義發展의 一大動因이 된 第一次世界大戰이 包含되는 明治末期부터 大正時代에 걸친 金融資本의 生成確立期에는 漁業에 있어서의 産業革命的 意義를 지니는 漁船動力化가 急激히 推進되어 漁業生産力의 劃期的인 發展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韓海에서의 日本漁業者 또는 移住漁業者들은 合邦初까지 主가 되었던 零細經營을 脫皮하고 近代漁業의 經營으로 轉化하게 되었으며 韓海에서의 韓國漁業도 發展을 가져왔다. 合邦以後 1942년까지 約 30年間 漁業者戶數, 漁船數, 漁獲高의 變化趨勢를 보면 漁業者戶數는 約 2.5倍, 漁業者數는 約 5倍, 그리고 漁獲高는 10~20倍의 增加를 보였다.⁸⁾

한편 漁業經營構造는 合邦前 特히 李朝末의 境遇 日漁民의 影響을 받아 一部 日本式 漁具·漁法을 採用하기는 하였으나 技術的인 面에 있어서는 舊套墨守的인 幼稚한 發展段階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上述한 바이다. 그러나 外壓에 의한 變則的인 貨幣經濟로의 移行 및 商品經濟의 發達は 農民層分解過程에서 形成된 漁民層內部에 分化를 일으킴으로써 韓末에 이르는 동안에 自然經濟的 副業 漁業形態를 濃厚하게 殘存시키면서 零細農業과의 緊密한 結合關係를 지니는 小商品生産의 漁業이

6) 朴九秉, 韓國漁業技術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 Ⅲ, 1968, p. 257,

7) 上同, pp. 253-258.

8) 朴九秉, 韓國水産業史, 太和出版社, 1963, p. 368.

廣汎히 普及되었고 이를 分解의 土壤으로 하여 封建社會의 胎內에서 資本制의 漁業의 端緒的 形態가 局部的으로나마 生成되어 數量的으로 增加되어 갔다. 當時의 漁業構造는 이러한 諸要素의 複合的 構成形態로서 捕捉할 수 있다. 對外的인 關係에 있어서는 韓日兩國漁民의 對立的 運動過程에 있어서 優越的인 日本漁民이 植民地의 支配의 基盤을 確立해 간 時期이다.

그러나 日帝時代의 漁業經營은 資金과 技術面에서 不利하고 또한 後進的인 韓國漁業이 日本人漁業과 步調를 같이 하여 近代化의 길을 걷지 못함으로서 沿岸性의 零細經營을 主體로 한 韓國人漁業과 資本制의 大規模漁業經營을 主體로 한 日本人漁業이란 二重性을 지니게 되었다. 當時 沿岸漁業은 韓國人 漁業者와 日本人漁業者의 數的 增加에 따른 漁獲努力이 增加되어 飽和狀態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日本人漁業者는 收益性이 없는 沿岸漁場을 버리고 近海漁業으로 進出하게 되었으며 近代의 大規模漁業經營으로 轉換할 經濟的 基盤이 缺如된 韓國人漁業者는 日本人이 크게 關心을 갖지 않는 沿岸漁場에서 小規模零細漁業을 經營하게 된 것이다.

Ⅲ. 合邦以前의 水産金融

1. 在來金融機關의 實態

1876年 江華島條約을 契機로 하여 그 以前까지의 韓國의 金融은 官에 의한 糧穀 등의 貨付·還收, 一部 兩班官僚에 의한 高利貸를 除外한다면 民間의 金融으로서는 客主, 旅閣, 契, 時邊 등이 唯一한 金融機關이었다. 이들은 韓國固有의 獨特한 金融機關으로서 當時 金融의 主役을 擔當한 極히 不備한 前近代의 制度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들의 金融機能은 大略 다음과 같다.

客主·旅閣은 元來 商品의 賣買가 主機能이고 그 外에 委託販賣業, 金融業, 倉庫業, 運送業, 宿泊業 등의 複雜한 機能을 同時에 兼⁹⁾함으로서 近代以前의 社會에 있어서 商業機關 내지 金融機關으로서의 重要한 役割을 遂行한 것이다. 特히 客主의 金融的 機能은 貸付業務로서 ① 物品의 販賣委託에 대한 假渡金, ② 物品의 委託販賣를 條件으로 하여 그 集荷先渡金, ③ 其他 高利貸 등을 行하였고 한편 預金業務로서 ① 商人으로 부터 委託받은 商品의 販賣代金의 保管, ② 商人이 利殖을 願하는 境遇 預受하여 高利貸를 하는 境遇, ③ 國庫金의 一時預金 등을 取扱하였다. 또한 於音의 發行과 引受業務도 하였다. 於音의 發行으로서는 ① 外上去來時에 그 代金支拂期日까지 發行하는 것, ② 外上去來代金決濟를 위한 信用貸付, ③ 土地, 家屋등 擔保가 提供되어 金錢貸付의 한 方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등이 있었다. 反面에 於音의 引受로서는 賣買當事者中 買入者가 現金이 없어 於音으로서 支拂하는 境遇 賣出者가 現金이 必要할 때 그 於音을 引受하고 金融의 便利를 圖謀하였다.¹⁰⁾

이와 같이 客主·旅閣은 荷主 또는 買主를 위하여 代金を 代身치루어 준다든가 商品이 팔리면 받기로 하고 資金을 먼저 供給하기도 하였다. 또 荷主가 商品을 팔고 於音으로 代金を 받았을 때에는 이를 割引도 하고 또 遠隔地間의 顧客을 위하여는 金錢財貨의 共濟를 代行하기도 하였다. 또 信用있는 客主·旅閣의 於音은 이미 契約되어 있는 各地에서는 貨幣로 交換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곧 換

9) 鈴木武雄, 朝鮮金融論十講, 1940, p. 74.

10) 釜山商工會議所, 釜山地域의 金融에 관한 研究, 1979, pp. 21-22.

이나 信用狀의 役割을 하였던 것으로 運搬하기가 不便한 葉錢時代에는 旅行者에게 큰 便利를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客主·旅閣은 富裕한 大官·兩班의 財貨를 保管해 주는 機關도 되었으니 그들의 貨幣를 맡아서 利殖을 붙여주는 私的 預金機關도 되었다. 그러므로 그 業務를 要約해 말한다면 貸付, 割引, 於音의 發行, 預金の 受取, 內國換業務 등으로 매우 廣範하여 受信與信의 兩業務를 兼行 하였던 것이다. 如何間 客主가 擔當하였던 金融業務가 스스로 於音을 發行하였는데 이것은 現金과 같이 널리 使用되어 信用貨幣로서의 役割을 하였고 預金·貸出業務도 取扱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客主는 大官이나 兩班 또는 商人으로 부터 預金を 받아들여 貨物을 擔保로 해서 貸主에게 貸出하거나 信用業務도 보았고 또한 멀리 떨어진 地域間的 金錢의 輸送과 債權을 推尋하여 이른바 換業務의 役割도 擔當함으로써 이들의 金融的 活動이 實로 컸다.¹¹⁾

契는 그 歷史가 매우 오래된 것으로 그 發生動機는 高句麗時代에 傳來된 佛敎의 福田思想에 根據를 두고 있는 「寶」의 殖利的 組織의 機能을 빌어 成立된 것이다.¹²⁾ 이는 朝鮮王朝에 들어와서 더욱 크게 發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存在하고 있다. 事實 封建社會에서의 集中的 高利貸의 公私債의 支配關係下에 그리고 寺院經濟, 王權과 官僚豪族들의 諸關係가 封建體制 그 自體와의 對立的인 諸矛盾의 發展過程에서 公私債의 對民關係를 強化하는 데서 農民의 이에 대한 最少限의 自己防衛와 最少의 救濟 등으로써 그러한 殖利性을 갖춘 組織을 農民들 自身이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韓國의 契가 弱者들이 强者에 對應하여 만들어진 自己防衛를 위한 結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이와 같이 民間의 相互扶助, 協同生活의 圓滑化를 圖謀키 위하여 組織한 契는 그 種類가 大端히 많다. 1927年 現在 公共事業을 위한 大洞契, 里中契, 部落契 등이 63種, 相互扶助를 위한 賻助契, 供役契, 冠婚契 등이 107種, 産業振興을 目的으로 한 農務契, 農民契, 農桑契 등이 58種, 金融을 目的으로 한 日收契, 金融契, 殖産契 등이 32種, 社交를 目的으로 한 詩契, 弓術契, 甲契 등이 13種, 其他 4種으로 合計 177種이나 되었다.¹⁴⁾ 이러한 契는 어디까지나 契員 相互間的 信用에 依據하여 封鎖的이며 非開放的으로 運營되었다는 點에서 前近代의인 形態의 金融方式이라고 하겠다.

時邊 또한 契와 마찬가지로 그 歷史가 오래된 것이다. 그 起源은 500年 或은 200年前부터라고 하나 分明치 않으며 이는 開城商人의 獨特한 金融機關이다.¹⁵⁾ 時邊은 資金의 貸借人 사이에 仲介人을 두고 아무런 物的 擔保의 受取없이 對人信用에 의하여 貸借를 決行하는 機構로서 開城商人들 사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協同精神과 信用을 生命과 같이 重視하는 商業道德을 背景으로 하여 나타난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開城商人間에 行하여진 一種의 貸付業으로서 換錢居間에 의하여 落邊이라는 金利計算法으로 無擔保로 資金의 貸借가 이루어졌고 資金의 需要와 供給의 兩者사이에 仲介人을 시켜서 純全히 信用에 의하여 資金의 流通을 圖謀한 制度이다. 때문에 貸借當事者나 貸借에 直接關係한 仲介人 以外에는 去來에 따른 金額과 그 事實은 全히 秘密에 붙여졌고 또한 時邊去來를 하는 者도 自己가 關係하는 去來 以外の 事實은 全히 알 수 없게 되어 있었으니 信用을 얼마나 重要

11) 許 懌, 韓國의 經濟發展과 金融構造의 變遷에 관한 研究, 釜山水大博士學位論文, 1984, p. 15.

12) 張靚錫, 漁村契에 관한 研究, 太和出版社, 1980, p. 16.

13) 上同, p. 15.

14) 許 懌, 前揭論文, p. 15.

15) 玄紋吉, 韓末 近代貨幣金融制度의 成立이 物價變動에 미친 影響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博士學位論文, 1980, p. 15.

視하였는지는 짐작이 간다. 아롱든 韓國在來金融機關인 客主, 旅閣, 契 등의 것 중 時邊은 이미 資本主義的 要素를 지니고 있었다.¹⁶⁾

끝으로 外劃制度는 郡守에 대해서 그가 徵收한 稅金을 國庫에 納付하기 前에 直接 第三者에게 納付할 것을 指示하는 命令을 말한다. 이 外劃制度에 의하여 官廳間이나 또는 中央과 地方間의 預金 融通이 可能하였으며 一種의 換機能을 遂行하였다.

以上에서 본 韓國在來의 舊來의 金融機關中 水産業과 가장 깊은 關係를 맺고 있었던 것은 客主와 旅閣 그리고 契였다. 客主에 관해서는 後章에서 詳論키로 하고 여기에서 契組織만 간단히 살펴보면 船舶契, 船契, 船村契, 漁業契, 漁網契, 海業契, 漁契, 漁夫契, 船倉契, 鴨鳥契 등 無慮 10種이나 된다.¹⁷⁾ 特히 船舶契, 船契, 船倉契는 漁業經營 등 公共目的의 契였으며, 船村契는 自活組織의 契, 漁業契와 漁網契는 漁業의 共同生活을 目的으로 한 契다. 漁業契는 出嫁한 濟州海女の 保護組織인 것으로 밝혀지며 漁夫契, 鴨鳥契는 朝鮮時代의 貢人階級の 一種인 納稅의 代行機關의 一種으로서 事實 近代의 漁民團體인 各種 水産關係組合이 있었다.¹⁸⁾ 말하자면 漁民團體는 契의 形態로 存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近代의 金融機關의 誕生

韓國에 獨特한 金融機關 또는 金融方法으로서 存在한 것은 客主, 旅閣, 契, 時邊 등이었음은 이미 既述한 바이나 이 같은 在來의 金融機關은 江華島條約締結以來로 漸次 變形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그것의 一部는 近代의 銀行制度속에 編入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農漁村 등 前近代의인 部門에서 名脈을 維持해 왔다.

그런데 江華島條約으로 釜山港이 開港되고 이어서 各地의 港口가 開港되면서 부터 日本의 經濟的인 進出이 커졌고 淸國, 美國, 英國, 獨逸 등의 列強도 韓國과 通商條約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李朝王國은 이때 부터 鎖國政策을 拋棄하고 對外通商을 開放하게 되었으나 通商의 利弊도 모르는 가운데 外勢의 一方의인 對韓進出, 經濟的 利得追求가 恣行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高宗 15年(1878)에 日本商品과 韓國에 대한 大舉進出과 때를 같이하여 日本의 第一銀行 釜山支店이 開設되었다. 이것이 韓國에 있어서 近代의 銀行制度의 嚆矢이다.¹⁹⁾ 開店當時에는 주로 釜山에 居留하는 日本商人들을 위한 貸付와 換業務를 取扱하였다.

日本의 第一銀行은 釜山에 이어 元山(1880年), 仁川(1883年), 서울(1885年), 木浦(1898年), 鎭南浦(1903年), 群山(1903年) 등의 차례로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하여 經濟進出을 위한 金融網을 形成하게 되었다. 特히 光武 9年(1905)에는 서울支店을 韓國總支店으로 昇格시켜 마치 韓國에 있어서의 中央銀行과 同一한 機能을 遂行하게 되었다.

16) 上同.

17) 崔正鈞, 水産業協同組合의 組織 및 機能의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釜山水大博士學位論文, 1982, pp. 4-5.

18) 上同.

19) 韓國에 最初로 登場한 日本系銀行은 1876년에 日本의 大實業家인 大倉太郎과 日本銀行의 頭目인 涉澤榮一이 資本金 5萬圓으로 設置한 釜山第一銀行이었다. 그러나 이 私設 釜山第一銀行은 資本金 5萬圓으로 充分한 活動을 할 수 없어 有名無實한 狀態로 있다가 1878年 日本第一銀行의 進出과 더불어 閉店되었다.

高宗 26年(1889)에는 長崎에 本店을 둔 第18銀行이 釜山과 元山에 支店을 두었고, 高宗 29年(1892)에 大阪에 本店을 두고 있던 第58銀行(後에 第130銀行, 나중에 安田銀行에 合併되었음)이 仁川에 支店을 設置하였는데 同行은 韓國의 銀貨를 大阪에 輸出하고 大阪에 있는 日本의 造幣工場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銀貨를 韓國에 輸入하는 業務를 擔當하기 위하여 設立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典圍局을 둘러싼 勢力다툼이 자주 일어나 그 本來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大阪에서 生産되는 綿織物이 韓國으로 많이 輸出됨에 따라 大阪商人이나 貿易業者들을 위한 商業資金의 供給機關으로 되었다.²⁰⁾ 그 밖에 日本興業銀行(1907年), 周防銀行(1908年), 密陽銀行(1908年) 등 日本系 銀行이 各各 韓國에서 서로 設立되었으며, 東洋拓殖株式會社도 金融部를 두고 預金 및 貸付業을 始作하였던 것이다. 또 日本系 銀行과 함께 韓國에 進出한 外換銀行으로서는 1898年の 香港上海銀行(英國系)이 仁川에 支店을 두었고, 同年에 露韓銀行이 서울에 設立된 일도 있었으나 이들 銀行은 큰 活動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日本系 銀行들은 本國의 資金基礎가 튼튼하였고 當時 近代的인 金融機關이 없었던 韓國에서 在韓日本人商工業者에 대한 金融便益을 提供하고 그들의 生業을 保護하는등 金融活動을 通하여 日本資本主義가 韓國에 進出할 基盤을 構築하였던 것이다. 特히 日本系銀行가운데서도 第一銀行은 對韓進出의 歷史도 오래되고 支店網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本國의 信用基盤도 컸고 또한 政治的인 交涉力이 뛰어나 韓國에 있어서의 日本金融의 總本山의 役割을 擔當하였고 나아가서는 1909년에 中央銀行인 朝鮮銀行이 設立될때 까지 韓國에 있어서의 中央銀行의 機能을 遂行하였다.

反面에 日本이 韓國에 대한 近代的인 銀行制度를 進出시켜 金融支配體制를 強化해 가자 韓國人側에서도 韓國人商工業者를 保護하고 自主的인 金融活動을 展開하려는 氣運이 드높아지게 되었다. 本格的인 韓國人銀行으로서는 1894年 甲午更張以後 朝鮮銀行, 漢城銀行, 帝國銀行 등을 設立하였으나 겨우 資本主義의 初期段階에 들어선 데 不過한 當時의 韓國經濟의 實情인지라 資本과 經驗의 不足, 利用의 低調로 인하여 閉店되고 大韓天一銀行, 韓一銀行이 營業을 繼續하여 그 後 組織의 變更 등을 通하여 오늘의 商業銀行과 朝興銀行으로 發展하였을 뿐이다.²¹⁾

當時 近代的인 金融機關의 融資惠澤은 主로 資力과 擔保能力이 있는 一般商工業者나 貿易業者에게 置重되었을 뿐 漁業者에게는(水産業에 대한 認識不足) 그 惠澤이 尠히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一般銀行의 設立에도 不拘하고 農漁民은 近代的인 金融制度의 惠澤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韓國 農漁村의 前期의 經濟構造를 打破하고 資本主義的인 商品生産과 貨幣經濟를 浸透시켜 農漁村經濟를 資本主義經濟體制에 再編成하기 위해서 農業資本의 供給을 擔當하는 金融機關이 要請되었다. 이것이 所謂 1906年の 農工銀行條例에 따라 發足된 農工銀行이며 1907年の 地方金融組合令에 의한 金融組合의 發足이다.²²⁾ 다시 1908년에는 東洋拓殖株式會社法이 公布되어 東洋拓殖會社가 發足하였다. 그러므로 農工銀行과 金融組合, 東洋拓殖會社의 三機關이 主로 農業金融을 擔當하는 農業信用制度의 支柱가 되었으나 여기에서 얻어지는 水産金融은 例外일 程度로 零細한 額이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人側에서도 漢城銀行을 始發點으로 하여 大韓天一銀行, 韓一銀行이

20) 玄紋吉, 前掲論文, p. 17.

21) 林苗民, 韓國의 銀行史, 1963, pp. 33-35.

22) 上同, p. 41.

創立되었고 나아가서 韓國政府는 地方産業의 發展을 促進키 위해 特殊銀行인 農工銀行, 地方金融組合의 設立도 推進되었다. 또 1909년에는 韓國 最初의 中央銀行인 韓國銀行이 公稱資本金 1千萬圓으로 業務를 開始하였다. 이렇게 해서 近代의 金融制度가 形成되기 始作한 1910년에 日本이 韓國을 合併함에 따라 日本의 金融資本의 進出이 本格化하는 가운데 韓國의 金融制度는 一聯의 整備過程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3. 水産業과 客主制度

客主의 起源에 관한 定說은 아직 없다. 다만 客主는 國家制度로서 發達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商慣習으로서 自然發達을 본 것이기에 이의 發生起源이 매우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事實 前期의 商業資本의 存在基盤이 單純한 商品流通 및 貨幣流通이 minimum의 條件이라고 할 것 같으면 自給自足經濟에 있어서의 小生産者層의 僅少한 剩餘生産物의 商品化 및 貨幣關係의 萌芽와 함께 客主 및 旅閣은 發生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따라서 客主의 起源은 近代以前 즉 지금으로부터 數百萬年前으로 逆及할 수 있는 것이다.

客主·旅閣은 主機能以外에 雜多한 附隨的 機能을 不透明하게나마 그리고 廣範한 範圍에 걸쳐서까지 그 機能을 同時에 兼하고 있었던 것은 流通經濟의 未發達, 交通의 不便 등 李朝封建社會의 社會經濟的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當時의 商業이 運送, 貯蓄, 金融, 旅宿業 및 其他 諸業種과 密接한 關係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²⁴⁾ 이들 客主는 朝鮮時代에 있어서 流通과 金融의 兩面에서 大端히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朝鮮朝末期에 그 活動이 絶頂에 達했음은 다음에서 그 事例를 볼 수 있다.

〔客主·旅閣의 漁業方面과의 關聯性을 보면, 漁獲物의 集散地 즉 出買船의 根據地에는 옛날부터 客主가 存在하였으며 魚類의 委託販賣, 運搬業者에 대한 資金貸付, 水産關係者를 宿泊시켜 去來仲介의 便宜를 圖謀하고 漁獲物의 保管도 맡아서 하는 등, 主로 水産物의 去來나 資金面에 直接 重大한 關係가 있었다. 麻浦, 黃江浦, 馬山, 江景 등은 古來로 本據地이며, 특히 麻浦에서는 韓末에 約 30名의 客主가 있었고 朝鮮最大의 根據地로서 最近까지 그 傳統을 이어 왔으나 太平洋戰爭에 의하여 會社組織이 되고 舊來의 客主制는 變貌했다. (中略) 古來로 朝鮮에 있어서의 魚類去來의 最大中心地는 元山, 馬山, 江景의 三港이었다. 이 三港은 朝鮮의 三海區를 各各 代表하는 集散地인 同時에 取扱하는 魚類를 달리하고 또 그 處理面에도 特色이 보인다. 즉 東海區의 代表魚類인 明太의 去來地는 元山이고, 馬山은 南海區의 대구, 청어, 멸치를, 江景은 西海岸의 代表魚인 조기를 主로 取扱하였다.

馬山은 東西兩海區의 中央에 位置하는 關係上 取扱魚類의 主體는 南海岸産에 두면서 다시 東西兩海岸産의 것까지도 消化한 것은 그 特色이다. 그리하여 韓末에는 30戶의 客商이 櫛比하여 年間去來高는 百萬圓에까지 達했다고 한다. (中略) 江景에 있어서의 魚類集散狀況은 明治 36年 林駒生의 調查報告에 의하면 年間 平均 約 38萬圓, 그 4割은 조기이며, 2割은 갈치였다. 그리고 當時의 集荷物

23) 金仁台·朴九秉, 水産經濟論, 太和出版社, 1963, pp. 144-145.

24) 崔兪鎭, 近代朝鮮經濟史, 慶應書房, 1942, p. 20.

은 大部分 朝鮮人이 漁獲한 것으로서 江景 12戶의 客主가 이를 處理했다. 이곳의 客主는 魚類專門의 것이 아니고 穀類, 雜貨를 兼營하는 것이었다.]²⁵⁾ 또 「東海岸의 明太의 集散地인 元山에서는 韓末에 客主가 約 70戶있었는데…… 各 客主가 每 1年間에 取扱한 水産物의 價額은 約 35萬圓에 達했다고 한다.」²⁶⁾

이와 같이 客主는 水産業部門에 깊숙히 浸透하였고 그 取扱額도 相當한 規模였다. 이들이 取扱한 商品은 勿論 水産物만은 아니었고 各種 商品을 取扱하고 있었으나 特히 水産物은 客主에의 依存度가 높았다. 水産物은 一般工産品에 比하여 極히 變質 腐敗되기 쉬운 商品의 特性, 즉 自然的 屬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商品適性이 缺如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農業生産物인 米麥처럼 一次的 必需品이 아닌 것이므로 漁民의 自給度가 낮아 이를 迅速히 處理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生産者인 漁民은 自己生産의 漁獲物處理를 위한 市場知識이 缺乏되고 生産手段에 대한 知識과 經驗 및 資力의 不足 등과 같은 經濟的 不利性으로 인하여 客主에 대한 依存도가 크지 않을 수 없었다. 特히 漁業은 生産의 場所가 水界이고 勞動對象의 大部分이 移動性動物이라고 하는 自然的 條件이 生産을 不確實케 하고 水産經營의 不安定性을 完全히 除去할 수 없게 한다. 게다가 水産物의 商品的 脆弱性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投機的 産業으로서의 性格을 蟬脫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水産業의 特有的 性格으로 말미암아 水産金融이 一般金融에 比하여 相異한 性質을 가지게 된다. 事實 貸付資本은 原則的으로 利潤發生이 確實하고 安全한 産業部門에 集中하므로 水産業에서는 資金流入을 困難케 하거나 極히 制限된다. 그러나 市場經濟를 前提로 한 資本主義經濟下에 生産을 營爲한다는 것은 不可避의으로 一定한 資金을 必要로 하나 自己資本의 蓄積과 貸付資本의 確保가 없는 限 所要資金의 不足分을 借入金으로 補充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客主에의 依存도는 避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漁業이 前期의 商業資本支配의 가장 典型的인 好地盤이 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客主는 그들이 寄生할 수 있는 好適한 基盤을 漁業에서 發見하고 그들은 漁業經營規模가 零細한 漁民을 相對로 하여 商品의 去來와 高利貸資本의 去來라는 二重의 機能을 同時的으로 遂行한다.

前期의 商業資本存在의 一形態는 高利貸資本인 것이며, 高利貸資本은 前期의 商業資本과 그 存在의 基盤 및 利害를 共通히 하고 大部分의 境遇 그와 同一 個別資本의 一側面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前期의 商業資本이 그의 價値增殖過程을 보다 完全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高利貸를 兼하는 것이다.

朝鮮時代에 있어서의 客主가 高利貸資本의 機能과 結合하여 漁民收奪을 強力히 遂行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나아가서 客主의 高利貸資本으로서의 機能은 單純히 高利貸資本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前貸 및 仕込까지 進展하였다. 韓末에 있어서 客主가 零細한 漁業者에게 現金, 漁具 및 日用品의 形態로 漁業資金을 先貸하고 그 漁獲物을 直接 引受하여 그들을 市場으로 부터 遮斷시킴과 同時에 自己에게 隸屬시켜 漁民을 收奪하는 事例는 다음과 같다.

「商人資本으로서의 客主는 前貸에 있어서 月 3分の 利子를 붙이고 漁獲物을 買收할 때에는 時價보다 割引하여 去來한다. 現金 以外에 漁具, 漁網 其他 日用品을 外上으로 給與할 때에는 市價보다

25) 朴九乘, 前掲書, p. 185.

26) 上同.

비싸게 價格을 부쳐서 거기에다 利子를 붙이고 漁獲物로 返還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魚價가 가장 下落하였을 때 (明太의 境遇는 舊歷 12月末 時勢)를 基準으로 計算하며 魚數를 加算하여 疋을 붙여 받는다. 漁業者가 現金을 借用할 때에는 반드시 先取利子를 떼고 貸付하며 借用期限前의 返債에도 利子金額을 負課시켰다.]²⁷⁾ 漁獲物의 前貸關係는 非但 明太漁業에서 만이 아니고 西海의 조기 漁業에서도 그 實例를 볼 수 있다.

「西海조기漁業에 있어서 經營資金은 大部分 客主로부터 借用하여 月利 4~5分을 支拂했으며 그 反濟는 現金拂과 現物拂의 二種이 있었고 特히 現物拂은 魚價를 割引하여 支拂하였던 것이다.»²⁸⁾ 그리고 南海의 境遇「鎮海灣의 大口, 멸치 등은 오늘날과 같이 客主의 손을 거치지 않았던 안되었고 客主들은 漁業者와 前貸 및 仕込關係로서 高利 및 商業利潤을 抽出함과 더불어 그 委託에 있어서도 賣買하는 雙方에서 口錢을 徵收했던 것이다.»²⁹⁾ 이와 같이 客主는 前貸 또는 仕込을 通하여 水產物流通過程을 掌握함으로써 漁業者를 苛酷하게 收奪하였을 뿐만 아니라 漁業生産에 있어서는 危險性, 不安定性, 不確實性 등이 隨伴된다는 水産業의 産業의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高利貸業者는 豫想損失을 考慮하여 漁業者에게 보다 不利한 條件의 設定을 強要했던 것이다. 薄資無産의 漁民은 漁業生産을 繼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不利한 條件도 甘受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一但 不漁가 繼續되는 날이면 漁業者는 高利貸의 掌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만다. 이와 같은 凶漁는 더러는 豐漁로 挽回될 수 있는 機會라도 있으나 漁業이 보다 低度의 發展段階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漁船, 漁具 등이 破損 또는 流失되는 일이 一層 頻發하여 漁業者는 큰 打擊을 받게 되어 結局은 債務奴隸化하거나 이에 가까운 地位로 轉落하여 縮小再生産마저 再開하기 困難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客主는 前貸制形態의 高利貸와 이를 통한 漁獲物의 獨占的 買收에 의하여 苛酷한 收奪을 敢行한 上記 例文을 볼 때 客主의 前貸資本의 高利의 收奪性이 얼마나 甚하였던가는 充分히 斟酌할 수 있다. 그리고 客主의 高利貸資本의 機能面을 볼때 貸付金에 대한 月 3分の 利率은 높지 않다. 그러나 現物前貸時에 있어서의 現物價格의 市場價格以上の 高評價, 漁獲物價格의 低評價, 漁獲物買收時의 價格割引등 水產物流通過程에 있어서 不等價交換에 의하여 發生하는 商業利潤과 元利金徵收方法의 恣意性에서 오는 利率의 實質的 高率化 등을 考慮할 때 表面上의 利率이야 如何했든 實質的으로 客主가 取得하는 利子部分 및 商業利潤은 二重 내지 三重이 되어 漁業者의 剩餘生産物의 一部 또는 그 全部를, 때로는 必要生産物의 一部까지도 收奪할 可能性의 餘地는 얼마든지 存在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客主의 商業資本家로서의 機能을 高利貸資本의 機能과 關聯시켜 考察함에 있어서 客主는 生産者에게 漁業生産手段이나 日用品 등의 現物을 前貸하거나 또는 이들을 貨幣形態로 貸與함으로써 流通過程을 生産者로부터 遮斷獨立化하여 不等價交換의 機能을 遂行한 것을 보았다. 이는 마차 16~18世紀 西歐의 工業에 있어서 支配的 經營形態였던 前貸制度 또는 客主制度和 類似한 것이었다는 것을 看取할 수 있을 것이다.

27) 林仁榮, 李朝魚物慶研究(一), 淑大論文集, 第15輯, 1975, p. 293.

28) 李鍾禮, 我國水産業의 流通構造에 관한 研究(一), 海務廳, 海務 第21卷, 1958, pp. 15-16.

29) 上同, pp. 16-17.

Ⅳ. 合邦以後의 水産金融

1. 近代의 漁業制度의 確立

韓國의 近代의 漁業制度가 確立된 것은 1908年 11月 1日 舊韓國政府에 의하여 制定·公布된 韓國 漁業法을 그 契機로 한다. 이 漁業法은 事實 日帝가 強壓과 欺瞞의 手段으로 韓國政府를 背後에서 調整하여 韓國政府로 假借한 漁業法을 制定·公布케 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漁業法을 舊韓國政府가 公布하기는 하였으나 實質的으로는 總督府에 의해 制定된 것이다. 그러나 비록 漁業法 그 自體가 上述한 바와 같이 日帝의 強壓의인 要請과 欺滿 등이 作用하여 어느 程度 그 自主性이 侵害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韓國에 있어 嚆矢를 이룬 것이라는 點에서 評價받을 만하다.

1910年 韓日合邦條約의 調印은 韓國이 名實共히 日帝의 植民地가 되었고, 同漁業法이 施行된지 不過 1年數個月만에 日本은 植民地統治를 위하여 同漁業法을 代身할 새로운 漁業制度의 必要性이 나타났다. 日本은 이미 次官政治時代로 부터 앞으로의 植民地漁政에 對備키 위하여 이에 適合한 漁業令制定을 위한 韓國沿岸의 漁場을 全般的으로 再調査에 着手, 그 結果로서 出刊된 것이 朝鮮總督府 農商工部編으로 되어 있는 「韓國水産誌」(全 4冊, 總 3,200面)이다.³⁰⁾ 이를 土臺로 하여 日本은 韓日合邦이 이루어지자 1911年 6月 3日 新漁業法으로서 本文 29條와 附則 7條로 된 漁業令을 勅令 第6號로써 公布하였고, 同日附則 漁業令施行規則과 漁業規則도 公布하였다.³¹⁾ 이 漁業令과 附屬法規는 1912年 4月 1日부터 施行되었고 이의 施行으로 舊韓國漁業法은 施行以後 滿 3年만에 廢止되고 말았다. 이로서 日本의 植民地水産業收奪政策遂行을 위한 制度的 整備는 一旦 마무리 되었던 것이다.

漁業令은 1929年 日本이 다시 이를 改正하여 朝鮮漁業令을 制定·公布할 때까지 植民地漁業의 基本法規로서 滿 18年間 持續되었다. 1929年 1月 26日 勅令 第1號로써 公布된 朝鮮漁業令은 本文 78條 附則 6條로 構成된 것으로서³²⁾ 舊令인 漁業令을 大幅的으로 改正하고 補完한 것이다. 그러면 朝鮮漁業令과 漁業令과를 比較해 볼 때 몇가지 相異한 點을 들 수 있겠으나 그 中 가장 注目되는 것은 첫째로 共有形態의 專用漁業制度의 創設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從來의 韓國漁業은 專用漁業制度가 缺如되어 있었다. 여기서 專用漁業制度라 함은 一定한 地域內에 居住하는 沿岸漁業者의 共同利益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特定水面의 專用權을 共有形態로 附與하는 漁業制度를 말한다. 따라서 漁業權의 主體는 어느 個人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集團의인 漁村構成員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沿岸의 主要 漁業이 私的으로 獨占化하는 近代의 漁業制度下에서는 專用漁業制度의 創設 그 自體가 沿岸漁業者의 生産手段인 沿岸漁場을 法律的으로 保護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重要的인 것은 保護區域의 設定인데 水産金融上의 觀點에서 볼 때 이는 前者보다 오히려 重要的인 措置였다고 할 수 있다. 保護區域이란 免許漁場에 있어서의 漁業權行使를 妨害하거나 또는 漁

30) 韓國經濟百年史, 1982, p. 281.

31) 朝鮮總督府官報, 第227號.

32) 上同.

業權의 價値를 損傷시키는 一切의 行爲를 禁止 내지 制限하는 規定으로서 이 保護取締規定이 없은 境遇 免許漁業 그 自體가 無意味하게 될 수도 있고, 水産金融上 漁業權의 擔保物件의 價値를 薄弱하게 할 수도 있다.³³⁾ 따라서 이러한 觀點에서 日帝에 의한 漁業令은 從來의 韓國漁業法보다 漁業權의 財産權的 性質을 強化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漁業權의 存續期間이 짧고 또한 漁業權의 登記제도 採用하지 않아 水産金融을 위한 擔保物로서는 不足한 點이 많았다. 金融圓滑化를 위한 漁業制度의 本格的인 改善은 朝鮮漁業令以後부터라고 하겠다. 朝鮮漁業令은 前述한 바와 같이 舊漁業令을 大幅의 改正하고 補完한 것으로서 同 漁業令의 公布에 이어 各種 附屬法規도 公布되었고 이들은 1930年 5月 1日부터 同時에 施行되었다. 이 新令을 公布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水産業의 飛躍的 發展과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興件의 變化에 따라 水産制度의 再編成이 要求되었기 때문이다. 朝鮮漁業令은 舊漁業令에 있어서의 金融上 不利한 點을 整備·補強하였는데 그 中 重要한 것의 하나가 漁業權制度의 確立에 의한 漁業權의 物件性의 強化였다. 이는 漁業權을 財産權으로서 制度的으로 確立하고 保護하여 漁業權의 擔保物로서의 適格性을 附與하는 데 있었다.

漁業令에 있어서는 既述한 바와 같이 漁業權에 관한 制度가 未備되어 金融面에서 不利한 點이 많아서 이에 대한 制度的 措置를 取했던 것이다. 그 內容을 보면, 첫째 漁業權은 物件으로 하고 土地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朝鮮漁業令 第15條 第1項)고 하고 朝鮮民事令에서 依據할 것을 定한 民法 第2編 第9章의 規定은 漁業權 및 이를 目的으로 하는 權利에 이를 適用하지 않는다(朝鮮漁業令 第2項)고 하여 第2項에서 指摘한 規定, 즉 質權에 관한 規定을 除外하고는 漁業權을 物權으로 하고 土地에 관한 規定을 準用케 함으로써 漁業權의 物件法을 法的으로 確保하여 그 財産權의 價値를 높였다.

둘째는 漁業權登記制度의 創設이다. 漁業權도 物件이므로 當然히 土地에 관한 登記制度가 準用되어야 하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土地所有權과 漁業權과는 權利의 發生, 消滅 등에 있어서 相當히 相異한 點이 있어 漁業權에 不動産登記令을 準用하기는 困難한 것이므로 漁業權과 이를 目的으로 하는 取先特權, 抵當權 및 賃借權의 設定, 保存, 移轉, 變更, 消滅 및 處分の 制限과 入漁에 관한 事項은 漁業權原簿에 이를 登錄케 하였다. 漁業權原簿의 登錄은 登記에 代身케 規定(朝鮮漁業令 第30條)함으로써 登錄制度로써 登記에 該當되는 效果를 代身케 하였다.³⁴⁾ 이 登錄制度가 完備됨으로써 漁業權의 擔保物로서의 價値는 增大되어 水産金融梗塞의 緩和에 寄與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다.

셋째는 漁業權의 存續期間의 延長과 更新制를 代身한 延長制의 創設이다. 漁業權의 存續期間은 漁業令에서는 免許받은 날로 부터 10年內로 規定(漁業令 第6條 1項)하고 있으나 朝鮮漁業令은 20年以內(朝鮮漁業令 第8條 2項)로 되었기에 이는 過去에 比해 2倍로 延長되었고 또한 漁業免許도 漁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漁業權의 存續期間滿了日로부터 20年以內에서 그 期間의 延長을 許可할 수 있다(朝鮮漁業令 第8條 3項)고 規定함으로써 從來의 免許인 更新制에서 延長制로 改正하였다.³⁵⁾

33) 韓國經濟百年史, p. 283.

34) 加藤眞考, 朝鮮漁業制度要論, 1922, p. 236.

35) 更新制에서 延長制로 改正함으로써 漁業權의 物件的 性格을 強化하여 그 經濟的 價値를 增大시키는 것이었다. 漁業權의 存續期間이 짧으면 漁業權에 대하여 抵當權을 設定함에 있어서 擔保權者인 金融業者는 이를 警戒할 것이므로 이를 長期化할 必要가 있었던 것이며, 業界에서는 이의 長期化 乃至 無期限化 즉 存續期間廢止를 主張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朝鮮漁業令은 存續期間을 2倍로 延長하였다. (山下重吉, 水産金融上より觀たる 朝鮮漁業令の價値吟味(三), 朝鮮之 水産 第64號, 1929年, p. 25., 參照)

解放以前の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넷째는 補償制度의 創設이다(朝鮮漁業令 第61條~64條, 朝鮮漁業令 施行規則 第49條~50條). 이는 朝鮮漁業令에서 新設된 規定의 하나인 바 이亦是 水産金融과 無關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水産業에 대한 制度改善은 漁業權의 法的 保護는 말할 것도 없이 漁業權의 經濟的 價値를 높여 朝鮮漁業令時代에 있어서의 水産金融圓滑化에 寄與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 効力을 지나치게 過大評價해서는 안 될 것이다. 漁業權의 物件性이 如何히 強化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融通性의 缺乏問題는 完全히 解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組合金融制度의 成立

韓日合邦以後 水産制度整備에 관한 一連의 措置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水産團體에 관한 法制의 成立을 처음보게 된 것은 1911년에 制定된 漁業令이다. 漁業令 第16條에서 第19條까지는 漁業組合과 水産組合에 관한 規定이 設定되어 있으며 이 規定에 根據를 두고 水産團體에 관한 法規인 漁業組合規則과 水産組合規則이 1912年 2月 23일에 公布되고 漁業令施行日과 同日附로 施行되었다.³⁶⁾ 水産團體制度란 漁業者의 事業圖謀, 漁村의 開發, 漁場의 管理·調整 등을 目的으로 하는 水産業從事者들의 構成團體에 대하여 그의 設立과 活動 및 運營을 保障하고 助成하며 規制해 나가는 各種의 去律制度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最初의 水産團體創設以來 半世紀의 歷史를 거치면서 많은 成長과 變化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制度의 變遷 혹은 組織의 成長過程은 여러 角度에서 考察할 수 있지만 水産團體에 重大한 變化를 招來한 事項들을 中心으로 그 過程을 區分하면 크게 4段階로 區分할 수 있다.³⁷⁾

第1段階: 漁業組合 등 水産團體의 設立과 그 活動을 認定한 制度의 創始 및 組織의 創設期(漁業令時代)

第2段階: 漁業組合 및 水産組合의 組織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오고, 機能의 強化를 要請하게 된 1930年以後의 朝鮮漁業令時代

第3段階: 水産團體의 系統組織에 大變革이 더해지고, 水産團體에 대한 政策機能을 強化하여 團體의 變質을 招來한 1944年以後의 水産團體統合時代

第4段階: 漁業의 民主化와 漁民의 自主·自律性을 바탕으로 한 1962年以後의 水産業協同組合法의 時代

水産團體制度는 以上과 같은 4段階의 過程을 거쳐 發達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第1,2段階만 보기로 한다. 第1段階인 漁業令時代는 上述한 바와 같이 水産團體에 관한 法規인 漁業組合規則과 水産組合規則이 制定됨으로써 이로 부터 沿岸地方에는 漁業組合들이 續續 設立되기 始作하였고, 官에서는 이를 植民地水産政策의 末端下請機關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이의 設立을 政策的으로 奨勵하기도 하였던 것이므로 그 普及은 比較的으로 빠른 速度로 進行되었다.³⁸⁾ 즉 1912年 巨濟漁業

36) 朝鮮總督府官報, 第445號, 1912年 2月 23日.

37) 崔正統,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관한 研究, 水産經營論集, 1980, 12, p. 158.

38) 同上, p. 159.

39) 韓日合邦後 日本은 舊韓國漁業法을 廢止시키고 그들의 植民地政策遂行에 必要한 漁業令을 새로이 制定 公布하였으며, 여기에 依據한 漁業組合規則과 水産組合規則을 制定하여 必要한 水産團體를 他律的 強制

조합의 설치를 嚆矢로 하여 1919年末까지 72개조합이 설치되었고 1929年末까지는 162개조합이 설치되었다.⁴⁰⁾ 이리하여 1920年代末에는 이미 大部分의 重要한 漁村에 漁業조합의 設立이 完了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水産조합의 設立은 漁業令時代에는 不振하여 同時代에는 漁業조합이 水産團體를 代表하는 存在가 되어 있었다.

水産金融에 있어서는 이 漁業조합이 큰 役割을 擔當하였다. 勿論 모든 漁業조합이 水産金融을 取扱한 것은 아니지만 漁業조합의 増設과 함께 共同施設事業의 一種인 水産資金貸付事業을 實施하는 組合數가 増加하여 1928년에는 漁業조합總數 150개조합中 94개조합이 同事業을 實施하여 15,775名에게 1,603,578圓을 貸付⁴¹⁾하는 實績을 記錄함으로써 漁業조합이 金融機關의 一面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當時의 漁業조합은 出資制度를 導入하지 않은 水産團體였으므로 貸出資金은 主로 外部의 起債에 의한 調達이었다고 하겠다. 즉 漁業조합은 主로 朝鮮殖産銀行과 金融組合聯合會에서 起債하고 나머지 一部는 各道의 地方費 및 其他에서 起債하여 組合員에게 媒介貸付하였다. 當時 貸出資金을 用途別로 보면 資金貸付, 舊債償還, 共同販賣, 共同購入, 保管倉庫建設, 漁夫顧用前貸, 漁船建造, 運搬船建造, 漁船漁具改良, 魚市場買收, 機橋架設, 保岸工事 등의 順位로 使用되었다.⁴²⁾

漁業조합의 起債는 漁業資金貸付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斷然 首位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貸付事業이 主로 起債에 依存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貸付金規模에는 좁은 限界가 있었다. 따라서 全組合員에게 滿足할 만한 資金을 貸付하기에는 事實上 距離가 먼 實情이 아닐 수 없었다. 當時 朝鮮殖産銀行의 水産資金貸付方針은 漁業조합을 통한 間接貸付를 原則으로 하고 그 組合員인 漁業者에 대한 直接貸付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金融組合聯合會로부터 水産資金을 借入할 때도 亦是 漁業조합이 借主가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漁業조합은 한편으로는 借主의 性格을 지닌 反面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貸主의 性格을 지닌 二重性을 띠면서 水産金融機關으로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였다.

金融조합의 地方的 中樞機關이었던 金融組合聯合會에서도 水産金融을 取扱하고 있었다. 漁業조합은 金融組合令 第93條 第2項, 즉 「金融組合聯合會도 金融組合以外에 朝鮮總督이 指定하는 産業에 關한 法人을 加入시킬 수 있다.」에 依據하여 金融組合聯合會에 加入할 資格이 附與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同聯合會는 會員漁業조합을 통하여 水産資金을 供給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初期에는 明太資金供給을 위하여 咸鏡南道의 數個조합이 加入한 以外에는 事實上 各道의 漁業조합이 加入을 拒否해 왔으며, 1927年初부터 비로소 各道의 漁業조합이 모두 그 加入을 認定하게 되어 1929年 3月末 現在

的으로 普及시켜 나간 것이다. 即 漁業令의 實施와 同時에 施行된 漁業조합規則 및 漁民團體의 種類를 漁業조합과 水産조합으로 限定시킴으로써 이 以外의 漁民團體에 대한 設立은 抑制하였으며, 地域内の 漁民들이나 特定 漁業者들은 漁業조합이나 水産조합에 強制 加入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團體加入強制制度는 1930年代의 朝鮮漁業令時代에 와는 더욱 強化되었다. (崔正鈞, 水産業協同조합의 組織 및 機能의 變遷過程에 關한 研究, p. 15 參照)

40) 水産廳, 韓國水産史, 光明印刷公社, 1968年, p. 401.

41) 山下重吉, 朝鮮に於ける 水産金融의 現狀을 概觀して 漁業조합의 豫金取扱制度의 必要를 考察す(二), 朝鮮之水産, 1929年, 第70號, p. 40.

42) 上同, p. 41.

로 25個 漁業組合이 金融組合聯合會의 會員이 되었다.⁴³⁾ 漁業組合의 金融組合聯合會로 부터의 借入 限度는 漁業組合이 所有하는 基金, 不動産 및 漁業權의 價格의 5倍였고, 組合員의 漁業組合으로 부터의 借入額은 普通 2百圓을 限度로 하고 不動産 혹은 動産을 擔保로 하는 境遇에는 5百圓까지 增借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物的 信用의 薄弱으로 漁業組合을 通하지 않고서는 金融의 길이 거의 없었던 零細漁業者에게는 便利하였다.⁴⁴⁾ 그러나 이것 亦是 所要水産資金總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보잘것 없었다.

水産團體制度發達の 第2段階에 該當되는 朝鮮漁業令時代는 1930年에서 부터 1944年까지의 14年間이며 同時代에는 水産團體에 대한 大幅的 改革과 整備가 이루어진 時期다. 漁業令이 施行되고 있었던 第1段階의 18年동안에 나타난 水産業의 顯著한 發展趨勢는 日帝初期에 樹立된 簡單한 漁業令의 改正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急速한 漁業의 發達과 社會經濟的 興件의 變化에 適應하지 않을 수 없는 客觀的 要請에 따른 水産制度改革의 產物로 나타난 것이 所謂 朝鮮漁業令이다. 同會의 規定에 이어 漁業令時代에 있어서의 漁業組合規則과 水産組合規則에 代身할 새로운 水産團體法規로서 朝鮮漁業組合規則과 朝鮮水産組合規則이 制定되어 施行되었다.⁴⁵⁾ 이에 의하여 再整備된 水産團體組織의 形態는 漁業組合系統組織, 水産組合系統組織, 水産會系統組織으로 構成되어 있다. 漁業組合系統組織은 3段階 2重加入制로서 下部漁業組合을 構成員으로 하여 漁業組合聯合會가 構成되고, 다시 漁業組合과 漁業組合聯合會를 會員으로 하는 朝鮮漁業組合中央會가 社團法人으로서 設立되었다.⁴⁶⁾ 水産組合系統組織은 水産組合과 水産組合聯合會로 構成되며 漁業令時代와 달리 制度的 整備, 官의 設立獎勵 등으로 그 設立普及이 活潑하였다. 그리고 水産會系統組織은 1923年 朝鮮水産會令을 根據法으로 하여 設立되었던 各道水産會와 朝鮮水産會가 併存하였다.⁴⁷⁾

이들 系統組織中 漁業組合系統組織과 水産組合系統組織은 共同施設事業中의 經濟事業의 重要한 事業으로서 水産資金貸付事業을 實施함으로써 水産團體金融의 圓滑化에 寄與한 것이다. 이리하여 水産團體金融이 活潑하게 되었으며, 特記한 것은 漁業組合이 組合員을 相對로 한 預金業務도 開始하게 되었던 點이다. 1929年 10月 10日에 朝鮮總督府令 第115號에 의하여 公布되고 朝鮮漁業令과 同日附로 施行된 朝鮮漁業組合業務規定⁴⁸⁾ 第10條에는 漁業組合의 共同施設事業種類를 列擧함에 있어서 委託販賣, 共同購入 등과 함께 同條 第3條에 「組合員의 漁業經營에 必要한 預金의 貸付」, 同條 4號에 「前號의 貸付資金에 充當할 目的으로써 行하는 組合員으로 부터의 豫金」이 列擧되고 있다. 朝鮮漁業令 第47條 第2項에는 漁業組合의 目的을 明示하여 「漁業組合은 組合員으로 하여금 漁業을 하기 위하여 漁業權을 取得하거나 漁業權의 貸付를 받고 또한 組合員의 漁業 또는 이에 關한 經濟 혹은 救濟에 必要한 共同의 施設을 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데 이 規定에 의하여 實施되는 經濟에 必要한 共同施設事業中 資金貸付와 預金取扱이 重要한 事業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43) 上同, p. 39.

44) 上同.

45)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29年 12月 10日.

46) 朝鮮總督府, 朝鮮の水産業, 1942年, p. 73.

47) 崔正統, 前掲論文, pp. 162-163.

48) 朝鮮總督府, 號外, 1929年 12月 10日.

끝으로 組合金融以外에 零細漁業者가 利用할 수 있었던 金融窓口은 制度的 金融, 國庫 및 公共團體金融, 各種의 契組織, 魚市場金融, 客主, 鮮魚運搬業者, 貸金業者 등이 있었으나 이것에서 부더의 資金調達은 極히 僅少한 것에 不遇하였다.

3. 水産資金의 融通과 그 惠擇

韓日合邦以後 近代的 金融機關은 相當히 普及되었으나 水産業에 있어서는 이렇다할만한 큰 變化는 없었다. 말하자면 近代的 金融機關이 提供하는 低利資金의 惠擇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음은 1918年代末의 水産資金의 主要構成分인 漁業資金의 供給實態에서 잘 나타나 있다.

朝鮮에 있어서의 大正 元年(1912年)의 漁業投資額은 漁船 157萬圓, 漁具 165萬8千圓, 運轉資金 95萬2千圓, 合計 427萬圓에 不遇하였으나, 大正 8年(1919年)中の 漁業投資額은 漁船 1,113萬9千圓, 漁具 1,081萬7千圓, 運轉資金 651萬8千圓, 合計 2,847萬5千圓의 巨額에 達하였다. 그 가운데 經營者自身이 投資한 것이 1,139萬5千圓이고, 他處에서 借入한 것이 1,707萬9千圓인데 이 가운데 141萬8千圓은 殖産銀行, 東拓會社, 朝鮮銀行 및 朝鮮內魚市場이 貸出한 것으로서 低利資金이라고 할 수 있으나 526萬5千圓은 日本에 主根據를 지니는 魚類輸送販賣業者가 貸出한 것으로서 漁獲物의 買收를 條件으로 한 것이며, 이들은 大概 無利息貸付를 標榜하나 그 漁獲物은 下關市場의 時價에 比하여 언제나 3分の 1內외의 廉價로 去來되는 實況이다. 또 그 以外의 1,039萬5千圓은 오로지 朝鮮內의 水産物客主業 및 地方貸金業者가 貸出한 것으로서 年 3割以上の 高利로 借用하고 게다가 그 漁獲物은 時價에 比하여 顯著하게 廉價로 引受하는 것이 常例이며, 이를 積算할 때는 借入金額에 대하여 적어도 5割以上の 高利를 支拂하게 되어 그 負擔은 決코 가볍지 않다. 朝鮮産業에 관한 特殊金融機關이 産業資金으로서 放出한 大正 8年(1919年)末의 現在高를 表示하면 株式會社殖産銀行 7,018萬3千圓, 東洋拓殖株式會社 3,779萬9千圓, 金融組合 2,300萬7千圓, 總額 1億3,090萬圓으로서 이를 用途別로 보면 農業資金 8,077萬圓, 商業資金 4,248萬2千圓, 工業資金 308萬圓, 鑛業資金 352萬8千圓, 水産資金 12萬9千圓으로서, 水産資金으로서 貸出된 것은 겨우 總額의 100分の 1에도 未達하는 狀況이다.⁴⁹⁾

이와 같이 1910年代末의 境遇 水産業에 대한 總所要資金 2,487萬5千圓中 自己資金은 1,139萬5千圓으로서 總所要資金의 約 37%이고 나머지 約 63%는 借入金에 依存한 實情이다. 그런데 이 借入金中에서도 比較的 近代的 金融의 惠擇이라고 볼 수 있는 低利資金은 140餘萬으로서 8%強에 不遇하고 나머지 90%以上은 거의 高利貸의 利用밖에 볼 수 없다. 또한 低利資金마저도 産業別 比重으로 보아 水産業部門이 他産業部門과 比較조차 안될 程度였다. 여기서 水産資金 12萬9千圓은 農業資金 8,077萬圓과 比較해 보더라도 0.16%에 不遇하다. 資金需要는 急激히 增大되었음에도 不拘하고 近代的 金融機關은 水産業에 대한 低利資金融資를 極히 警戒하여, 水産業部門에서는 高利貸資本으로 하여금 金融의 主役을 擔當케 하고 있었던 것이다.

近代的 金融機關이 보다 擴充된 1920年代도 水産業部門에 있어서 高利貸資本에 대한 依存度는 如前히 컸다. 1925年頃의 漁業資金調達內容⁵⁰⁾을 보면 總所要資金 2,804萬圓(漁船 915萬圓, 漁具 1,235萬圓, 運轉資金 654萬圓)中 自己資金은 1,122萬圓이고 借入金은 1,682萬圓(朝鮮殖産銀行 209萬1千圓, 金融組合聯合會 19萬5千圓, 金融組合 22萬4千圓, 朝鮮內魚市場 40萬圓, 地方貸金業者, 客主 및

49) 朝鮮總督府, 朝鮮の水産業, 1921, pp. 19-20.

50) 上同, 1925, pp.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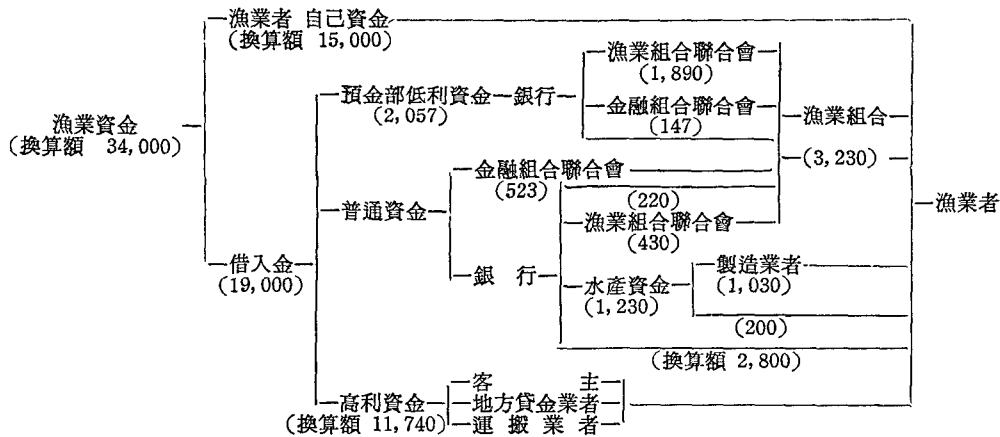
解放以前の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日本에 根據를 지니는 魚類運搬業者 1,391萬圓)이다. 이 中 低利資金이 占하는 比重은 1910年末보다는 多少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17%強에 지나지 않는다. 이 事實은 다음과 같이 附加的 說明을 하고 있다.

漁業의 狀態를 보건대 近來 動力附漁船에 의한 若干 大規模의 漁業의 勃興하여 그 漁業者는 多少의 資力을 지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運轉資金의 融通이 比較的으로 容易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漁業全體로 通觀할 때는 아직도 沿岸小漁業者가 大部分을 차지하며, 이들 小漁業者는 資力이 薄弱한 無産階級에 屬하고 前述한 바와 같이 高利의 借入金에 의하여 간신히 漁業에 從事함으로써 恒常 負債의 償還에 쫓겨 生活의 安定을 얻지 못하는 狀況에 있다. 이에 대하여 低利資金의 融通을 圖謀하고 漁利를 漁民의 손에 돌아가게 하는 方途를 講究하는 것이 漁業의 發展과 漁業者의 福祉를 增進시킴에 있어서 가장 緊要한 事項이며……

이와 같이 低利資金의 惠擇은 一部 小數의 日本人 大規模漁業者에게만 돌아가고 大部分의 朝鮮人 零細漁業經營者에게는 거의 惠擇을 입지 못한 나머지 恒常 資金難을 겪었고, 高利貸資金의 壓力으로 언제나 負債償還에 쫓기면서 貧困을 免치 못했던 것이다. 아뭏든 漁業資金의 調達狀況은 1920年代末에도 1920年代中期와 大同小異하여 크게 改善된 點이 없었다.⁵¹⁾ 그러나 水産金融梗塞의 緩和를 위한 制度的 整備와 水産團體金融의 擴充 등에 힘입어 朝鮮漁業令時代부터는 水産金融이 多少間 好轉되었던 것은 事實이나 그렇다고 水産金融의 不利性이 모두 解消된 것이 아니었고 水産團體金融도 그 規模에 限界가 있었던 것이므로 水産金融分野에서도 日帝時代末期에 이르기까지도 問題點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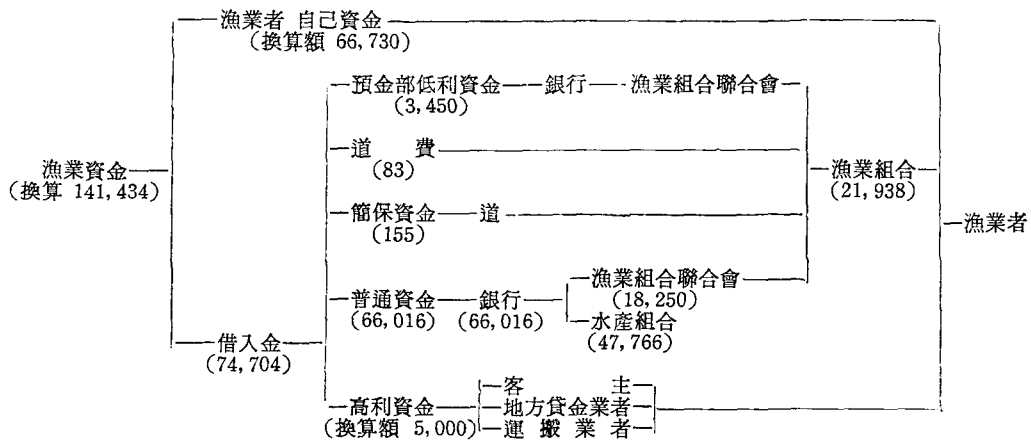
그림 1. 漁業資金 供給系統圖(1933年)



註：金額單位는 1,000圓입.
資料：朝鮮統督府, 朝鮮の水産業, 1934年, p. 29.

51) 上同, 1927, 1928, 參照.

그림 2. 漁業資金 供給系統圖(1941年)



註：(1) 金額單位는 1,000圓인.

(2) 簡保資金은 朝鮮簡易生命保險積立金資金의 預入에 의한 預金部資金인.

資料：朝鮮總督府, 朝鮮の水産業, 1942年, p. 20.

여기에서 海業令時代는 論外로 하고 朝鮮漁業令時代와 漁業令時代를 比較하여 달라진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水産團體金融의 擴充이다. 漁業組合聯合會와 水産組合은 低利資金의 性格을 띤 各種資金을 供給하고 있었다. 漁業組合聯合會의 目的은 所屬組合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設을 하거나 所屬漁業組合에 대하여 業務上의 指導를 함을 目的으로 한다(朝鮮漁業令 第50條 第2項)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會員組合을 위한 共同施設事業과 業務指導가 主要事業이었는데 前者에 屬하는 것 중에서 金融事業이 中心的 事業이었다. 同聯合會는 그림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諸種의 金融機關에서 起債하여 所屬組合에 轉貸用水産資金을 供給하였다. 한편 漁業組合은 起債한 資金을 主財原으로 하여 漁業者에게 資金을 媒介貸付하였다. 朝鮮漁業令時代에는 大部分의 漁業組合이 資金貸付事業을 實施하였으며, 委託販賣事業과 資金貸付事業이 經濟事業中에서 가장 重要한 事業이 되어 있었다.

水産組合도 資金貸付事業을 重要事業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 水産組合의 目的은 當該 水産業의 改良發達을 圖謀하고 營業上의 弊害를 矯正함을 目的으로 한다(朝鮮漁業令 第54條 第2項)고 하여 水産組合의 共通의 目的을 法律로써 定하고 있으나 實際의 事業內容은 組合別로 若干의 差異가 있었다. 그러나 資金貸付事業이 重要한 事業으로 되어 있었던 點은 共通性을 지니고 있었다. 水産組合은 數的으로는 漁業組合과 比較가 되지 않았지만 低利資金供給의 比重은 尙음이 그림 1과 2에 나타나 있다. 比較的으로 規模가 큰 漁業者, 水産製造業者, 水産物輸出業者 등이 業種別로 組織한 것이 水産組合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水産組合은 主로 日本人을 위한 團體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V. 金融梗塞과 高利貸資本

水産金融圓滑化를 위한 各種의 制度的 整備와 組合金融의 擴充 등에 힘입어 資金事情이 크게 緩和된 것은 事實이나 그렇다고 漁業者의 資金需要를 全的으로 充足시켜주지 못함으로서 金融梗塞現

象은 勿論 高利貸資本의 壓力도 如前히 컸다.

水産業은 他産業과 달리 危險性, 低收益性, 資本需要의 季節性, 生産의 不確實性, 生産手段의 擔保性의 不適合性 때문에 各種 金融機關으로 부터 外面當하는 등 所謂 金融機關의 融資對象에서 除外되었다. 漁業令時代에 近代的 金融機關이 水産業에 대한 融資를 警戒하고 忌避하는 理由는 水産業의 危險, 事業의 永續性의 缺如, 擔保力의 不良, 漁業者事業計劃의 拙劣, 漁業者의 信用의 低劣, 水産統計의 不完全, 官廳의 調査施設의 不充分 등에 있었다고 指摘하고 이것이 또한 金融機關이 水産金融에 대하여 逡巡警戒하게 된다고 하였다.⁵²⁾ 한편 金融機關의 見解에 대한 水産業의 應酬로 다음과 같이 指摘되고 있다. ① 水産業을 危險성이 큰 事業이라고 하는 것은 金融業者가 水産業에 대한 知識이 없고 水産業의 實體를 正確히 把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② 漁船, 漁具 또는 漁業權이 擔保物로서 不適當하다는 것도 法制的 不備와 社會의 無理解에 基因하는 것으로서 水産業者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서도 水産業者의 信用制度가 낮다는 것이라든가 水産統計가 不完全한 點이 많다는 것 등은 否認할 수 없는 것으로 水産業者도 自認한다고 하였다.⁵³⁾ 이 중 一部는 水産業에 대한 올바른 理解, 制度 및 行政面의 改善를 통해 어느 程度 緩和시킬 수 있겠지만 水産業自體가 갖고 있는 宿命的 特質인 危險性은 除去할 수 없는 水産金融不振의 가장 重要한 原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水産業이 他産業에 比하여 金融梗塞現象이 深刻한 것은 어느 時代 어느 國家를 莫論하고 共通된 現象이라 할 수 있다.

合併以後 1930年과 40年代의 水産資金供給狀況을 보면 1933年의 境遇 總漁業資金 34,000千圓中 漁業者 自己資金은 15,000千圓, 借入金은 18,000千圓으로 外部借入金이 自己資金을 超過하고 있으며 1941年의 境遇도 總漁業資金 141,434千圓, 漁業者自己資金 66,730千圓, 借入金 74,704千圓으로서 같은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借入金中 高利貸資本에 대한 依存度는 1940年代에 들어와서는 相當히 減少되었다. 즉 1933年의 境遇 總借入金 19,000千圓中 客主나 地方貸付業者 혹은 運搬業者 등 高利貸金業者로 부터의 借入은 11,740千圓으로 約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1941년에는 總借入金 74,704千圓中 高利資金은 5,000千圓으로 不過 6.7%에 그쳤다.⁵⁴⁾ 이는 前期的 高利貸資本의 苛酷한 收奪을 排除하기 위하여 水産團體金融을 積極 助長한 데 基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水産金融梗塞의 緩和에 따른 制度的 整備와 水産團體金融의 擴充 등은 水産金融事業을 好轉시켰으나 그래도 水産金融의 不利性이 모두 解消된 것은 아니었다. 1940年代初에 있어서의 水産金融에 관하여 當時의 朝鮮總督府 刊行物은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漁業者의 最近의 漁業投資額에 대하여는 現在 詳細한 調査가 缺如되어 있으나 統計 其他의 材料를 基礎로 하여 이를 推算하건대 漁船 7千萬圓, 漁具 4千5百萬圓, 運搬資金 2千6百萬圓, 合計 1億4千1百萬圓의 巨額에 達한다. 그리고 위 投資額中 經營者의 自己資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大略 6千6百萬圓으로서 나머지 7千7百萬圓은 借入金이다. 그리고 그 借入金中 漁業組合,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金融組合, 道費 또는 大藏省預金部低利資金 등의 貸出에 屬하는 比較的으로 低利로 볼 수 있는 것 約

52) 山下重吉, 朝鮮に於ける水産金融の現狀を概觀して漁業組合の預金取扱制度の必要を考察す(四), 朝鮮水産會, 朝鮮之水産, 第71號, 1930, p. 13.

53) 同上.

54) 朝鮮總督府, 前掲書, 1934, p. 29, 1942, p. 20.

수 산 경 영 론

6千9百萬圓을 除外한 5百萬圓은 地方貸金業者 또는 客主 혹은 魚類運搬業者의 貸出에 屬하여 적어도 年 3割以上の 高利로써 借入하거나, 또는 無利子를 標榜하더라도 債務者의 漁獲物은 이를 債權者에게 引渡하는 條件에 의한 것으로서 언제나 市價에 比하여 廉價로 去來되므로 事實에 있어서는 高利에 相當하며, 漁利의 大部分은 이들에게 壟斷되고 있다. 한편 漁業의 狀態에 보건대 近來 動力附漁船에 의한 若干 大規模의 漁業이 發達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漁業者는 運轉資金의 融通을 比較的으로 容易하게 하고 있으나 아직도 沿岸의 小漁業者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또한 이들 小漁業者는 資力이 薄弱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高利債의 桎梏을 免할 수 없고, 恒常 負債의 償還에 쫓겨 生活의 安定을 얻지 못하는 者가 적지 않는 狀態에 있다. 이에 대하여 本府에서는 低利資金의 融通을 圖謀하여 漁業의 發展과 漁業者의 福祉를 增進시킬 目的으로 漁業組合 또는 水産組合의 擴充을 促進하고 이들 組合으로 하여금 資金의 造成에 힘쓰게 함은 勿論 一面 預金部低利資金 등의 融通에 努力하고 있는 바로서 漸次 良好한 成績을 올리고 있으나 아직도 全般에 걸쳐 이 施設을 徹底를 期하기에 이르지 못한 것이 遺憾이다.⁵⁵⁾

低利資金에 의한 水産資金의 疏通이 크게 改善되었다고는 하나 零細漁業者는 아직도 高利貸의 壓力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큰 問題가 있었다. 事實 高利貸資本은 前資本主義經濟下의 借用者의 全剩餘生産物을 占有하고 때로는 必要生産物의 一部를 占有 寄生하고 있다는 點에서 近代의 貸付資本과 根本的으로 서로 相異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高利貸資本이 存在하는 基盤은 生産樣式이 資本主義經濟에 까지 發展하지 않고 生産物이 商品에 轉化되어 이르 인한 商品去來의 發達과 貨幣經濟가 어느 程度 浸透되어 있다고 하는 前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이 그 溫床이 되어 있는 것이다. 前資本主義的 生産樣式下에 있어서의 高利貸資本은 一般的으로 두 階層의 對象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豪華로운 消費의 豪族(本質的으로는 土地所有者)에 대한 高利貸資本이고,

둘째는 自己의 勞動條件의 所有者인 小生産者에 대한 高利貸付이다. 이 小生産者中에는 零細漁民들과 農民들이 包含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에 있어서는 借入된 貨幣는 資本으로서 機能을 하지 않고 大部分 家計消費에 充當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借用者가 한번 高利貸資本의 毒牙에 걸리면 그들은 여기에서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어 높은 利子는 그의 剩餘生産物을 全部 吸收되어 그 手中에는 다만 生活資料만을 남길 뿐이다. 이로 인하여 借金は 反復되고 債務는 增大傾向을 밟아 小生産者는 終局的으로는 沒落하고 만다. 高利貸資本은 商品生産을 發展시키는 것이 아니고 不當하게 高率의 利子를 徵收함으로써 商品生産을 破滅시킨다. 이와 같이 高利貸資本에 의한 全剩餘生産物의 吸收는 오히려 高利貸資本家自身の 生存의 存立基盤인 小生産者를 破壞함으로써 그 自身の 發展을 停止케 하여 舊來의 形態로서 寄生物的 生存을 繼續하든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形態로 轉換하든가 하는 兩者擇一의 길을 걸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結局 小生産者가 破滅하면 高利貸資本의 寄生基盤이 없어지게 되므로 高利貸資本家는 零細한 小生産者의 存立을 繼續 維持시키려고 努力할 것이다. 朝鮮漁業令時代全般을 通해 볼때 水産業에 대한 高利貸資本의 壓力이 크게 殘存하고 있었고 그것은 주로 零細漁業者에게 集中的으로 壓力을 加한 것이었다는 데 큰 問題가 있다고 하겠다. 1933年 11月 17日 東亞日報은 「一千萬圓債金에 呻吟하는 更生無望의 慶北漁村」이라는 標題로 다음과 같이 報道하고 있다.

[포항] 농어산촌(農漁山村)은 일률적으로 피폐하여 가거니와 최근 건북 일대에 산재한 어촌 정세를 본

55) 上同, pp. 18-19.

解放以前の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다면 어민들의 생활은 어흥, 폭풍 등의 천재와 대자본의 진출로 나날이 몰락과정을 밟아 파산 유리하는 자가 속출하는 참혹한 현상이므로 저리자금의 융통 어구(漁具)개량, 간이어업과 부업을 장려하여 중간 이익을 배제하고 생산을 증가시키려 각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나 워낙 많은 부채에 눌리어 용이히 경영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이제 당국의 조사발표한 바에 의하면 경북 二만三천여 어민의 부채는 어업조합의 저리자금 四十만원 기타 유효채권(有效債權)을 합하면 五백만원에 달한다 하며 기타 개인 부채를 합하면 一천만원 이상으로 매호 二천원 평균이란 거액에 달한다는데 어업조합의 저리자금의에는 어촌의 고리(高利)란 일반에 그 유례가 없는 고리로 무엇보다 어촌진흥을 꾀하는 제일보는 부채정리로 부터 시작되리라 한다.

이와 같이 漁民은 巨額의 負債에 呻吟하고 있었던 것이다. 高利貸의 被害를 입은 漁業者는 漁業 目的의 融資惠擇조차 제대로 입을 수 없었던 零細漁民層이었으며, 近代의 金融機關이 아무리 整備 充實되고 水産團體金融이 發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小規模零細漁業者와는 거의 無緣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吸血的 高利貸의 魔手에서 平生 벗어나지 못하고 累積된 負債때문에 또다시 負債를 늘리면서 債務奴隸化하고 그 身分은 固定化하고 永久化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階層이 바로 日帝時代의 植民地統治下에서 漁村의 最下層에 沈淪되어 있었던 零細한 朝鮮人漁業者였던 것이다.

VI. 結 言

解放以前の 水産金融은 開港以後 韓末을 거쳐 日帝時代에 이룰때 까지 制度나 體制面에서는 많은 改善이 이루어졌으나 金融의 窮極的인 目的인 資金의 圓滑한 供給이란 面에서는 如前히 不振한 狀況이었다. 勿論 解放以前の 韓國經濟는 겨우 自然經濟에서 벗어난 資本主義初期段階에 있던 當時로서는 資金의 供給不足現象이란 一見 當然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水産金融의 境遇, 一般的 資本主義成長段階에 따른 他産業金融의 比重보다 越等히 뒤떨어진 것은 水産業이 産業의 性格上 資金需 求가 많은데 反하여 水産業의 産業的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資本制限이 크다는 二律背反의 特性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金融梗塞이 痼疾化되고 있다는데 問題가 있다.

開港以後 西歐資本主義에 의한 他律的 近代化가 推進되고 日帝의 意圖의 侵入이 加重됨에 따라 朝鮮社會도 서서히 外型의 變化를 가져왔고 水産業도 이러한 外型의 近代化에 힘입어 各種 漁撈裝 備과 技術面에서의 發達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또한 近代의 金融機關의 誕生도 보았다. 水産金融面 에서 이러한 制度的 金融機關의 設立은 長期低利資金의 供給이란 側面에서 볼때 매우 바람직한 現象이었으나 大部分의 零細한 漁業者들은 이들의 融資對象에서 그 惠擇이 除外되었다. 資金窮乏에 直面한 漁業者들은 生業이나 漁業生産을 繼續 維持키 위하여 不得已 高利貸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고, 反面에 水産部門에서 高利貸資本으로 하여금 金融의 主役을 擔當한 客主는 國家權力과 結託하거나 高利貸의 機能과 結合하여 二重 三重으로 漁業者를 收奪 하였다.

日帝時代에는 日本이 그들의 資本主義發展의 基盤構築과 侵略戰爭遂行을 위해 韓國에 水産業을 振興시킬 必要性을 느끼고 이들은 植民地漁政에 맞는 漁業制度의 確立을 위해 漁業令과 朝鮮漁業 令을 차례로 公布·實施하였다. 漁業令은 水産金融의 觀點에서 制度自體가 未備하여 金融上의 隘路가 있었으나 朝鮮漁業令은 比較的 水産金融圓滑化를 위한 制度整備가 잘 이루어져 金融梗塞現象을

수 산 경 영 론 집

크게 緩和시켰다. 特히 漁業權의 物件的 強化와 組合金融의 獎勵는 水産金融圓滑化에 奏効한 效果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水産金融改善의 惠擇은 어디까지나 全漁業者에게 均等하게 미치지 못하고 日本人이나 一部 大規模漁業者에게 限定되었을 뿐 受信力이 微弱한 大部分의 零細漁業者는 如前히 高利貸資本의 支配下에 있었다.

A Study on the Fisheries Financing before the Liberation of Korea

Kyoung-Ho Kim

Summary

In fisheries financing before the liberation of Korea, the accommodation of funds through modern monetary facilities was hardly benefited to most of small-scale Korean fishermen except Japanese fishermen living in Korea and some large-scale Korean fishermen.

In fact, since Korean economy was only in the beginning stage of capitalism free from natural economy in the end of Yi Dynasty, it was natural that the supply of funds should be lacked. But after the opening of ports in Korea, the external shapes in Korean society were slowly changed according as heteronomous modernization was pushed forward by means of western capitalism and the intentional invasion of Japanese was gradually weighed.

Thus all kinds of fishing equipments and technique were developed by dint of modernization, and modern monetary facilities also came into being. But most of Korean fishermen were hardly benefited by modern monetary facilities. Fishermen who were faced with destitution of funds were forced to rely upon high interest loans in order to make a living or maintain fisheries, and they were severely exploited by usurers.

The situation was the same in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felt the necessity of advancement of Korean fisheries and established fisheries institution suitable for all kinds of colonial fisheries policy toward Korea so that they could build up the found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carry out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Sino-Japanese War. There were a series of bottlenecks in financing on account of the deficiency of fisheries institution in the beginning of Japanese imperialism, but the financial pressure was lightened because the arrangement of institution greatly contributed to the smoothness of fisheries financing in the latter part of it. Despite such improvement of financing, the benefit of funds could not equally reach to all the fishermen. It only reached to Japanese fishermen living in Korea and some large scale Korean fishermen. Thus most of Korean fishermen could not free themselves from destitution of financing and the pressure of high interest loans.

This phenomenon took place because Korean fisheries had the antinomic characteristics that financial restriction was excessive owing to the industrial speciality of fisheri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large financial demand in fisheries in the character of industry.